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17 선고 2016가단264536(본소), 2017가단201310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· 구상금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9. 21 선고 2017나60626(본소), 2018나59159(반소) 판결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8. 17 선고 2016가단264536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

변론 종결 2017. 5. 18.

판결 선고 2017. 8. 17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청구 및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)에게

65,313,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 14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에게 130,627,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5. 3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A 차량(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)이 2014. 11. 22. 07: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2차선에 불법 주차 중이던 D 차량(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)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앞에 서있던 E이 원고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고, 이처럼 도로에 넘어진 E을 다시 피고 차량이 역과한 후 도주하는 사고(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나.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의 치료비 등으로 총 653,139,8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,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를 청구하였다.

다. 이에 구상금심의위원회는 불법 주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%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65,313,988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, 원고는 위 심의 결정에 따라 2016. 12. 13. 피고에게 65,263,990원을 우선 지급한 후 2016. 12. 21.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와 이 사건

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한 65,313,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가 한 원인이 되었고,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30%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구상금 이외에 추가로 130,627,984원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,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과실비율은 얼마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, 갑 1 내지 11호증, 을 1,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위 자동차보험 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10%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(게다가 갑 6,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, 피고 모두 가입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).

- 당시 도로상황이나 사고시각, 날씨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 차량의 불법 주차가 없었더라면 E이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원고 차량의 과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.

-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, 원고 차량을 충격한 후에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E을 역과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과실을 10%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장욱